



즉시 배포용: 2023년 7월 25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차별 피해자에게 약 700만 달러 지원금 지급 발표

지난 6년간 뉴욕주가 확보한 것 중 가장 높은 2023년 회계연도 총 보상액

주 전역에서 1,000명 이상의 뉴욕 시민이 금전적 손해 배상 및 보상 제공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인권부(New York 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가 2023년 회계연도에 고용, 주택, 공공시설에서의 차별 피해자 1,000명 이상에게 거의 700만 달러에 달하는 보상을 지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액수는 지난 6년간 지급된 금액 중 가장 높은 총 보상액으로, 2022년 회계연도보다 7.4%, 팬데믹 이전 2019년 회계연도보다 26.8%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이 부서는 차별적 관행 및 정책에 대해 고용주, 주택 제공자 및 기업에 대해 269,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금을 확보하면 피해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정의를 찾고 뉴욕을 모두에게 더 안전한 주로 만들려는 우리의 노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무자비한 고용주, 주택 제공자 및 기업은 차별적 관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차별 피해자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인정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인권부 Maria Imperia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인권법에 따르면 모든 뉴욕 시민은 완전하고 생산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갖습니다. 주택, 교육, 고용 등 어떤 분야에서든 차별이 발생하면 그 권리와 기회가 박탈됩니다. 뉴욕주의 인권법 집행 기관으로서, 계속해서 교육 활동을 통해 대중에게 힘을 실어주고 모든 뉴욕 시민들이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할 것입니다."

인권부는 주 인권법을 시행하고 뉴욕 시민이 제기한 차별 불만을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조사 외에도 이 부서는 주 인권법(Human Rights Law)에 따른 권리가 침해된 사람들에게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금전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인권부는 정책 변경, 교육 및 접근성 수정을 포함한 추가 구제책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지난 회계연도에 인권부의 업무 결과 총 1,012명의 피해자가 670만 달러의 금전적 손해 배상 및 보상을 받았습니다.

사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롱아일랜드의 한 트럭 운송 및 물류 회사의 영업 사원은 연령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져 **24,435**달러를 지급받았습니다. 고용주는 그녀에게 조기 퇴직을 압박했고, 나이 때문에 학습 능력에 대해 경멸적인 발언을 했고, 결국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녀를 젊은 직원으로 대체했습니다. 또한 인권부는 회사에 **10,000**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 발전소에서 조경사로 일했던 로체스터 여성은 자신의 성별과 장애로 인해 차별과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회사가 여성 조경사를 남성 근로자로 대체하려고 했으며, 허리 질환으로 인한 해제 제한을 합리적으로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만 사항은 총 **12만** 달러에 해결되었습니다.
- 물류 및 운송 회사에서 매니저로 일했던 롱아일랜드의 한 남성은 자신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자 육군 예비군이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했다는 이유로 차별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부하 직원의 위법 행위를 신고한 후 다른 백인 관리자들은 신고를 하지 않은 반면, 자신은 신고한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만 사항은 **46,000**달러의 합의로 해결되었습니다.
- 아파트 건물에 사는 퀸즈의 한 남성은 집주인이 정서적 지원권을 키울 기회를 거부하고 의료 전문가로부터 숙소가 필요하다는 문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퇴거시키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만 사항은 **19,000**달러에 해결되었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에 해결된 모든 DHR 사례를 지역 및 보상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불만 건수	보상
Capital Region	44	\$324,734.75
Central NY	79	\$612,046.69
Finger Lakes	148	\$1,322,496.36
Hudson Valley	87	\$562,531.76
Long Island	139	\$690,595
Mohawk Valley	23	\$157,900
New York City	299	\$1,805,061.44
North Country	20	\$83,303.82
Southern Tier	31	\$152,131.58
Western NY	142	\$997,208.67

뉴욕주 인권법은 연령, 인종, 신념, 피부색, 성별, 성적 취향, 성 정체성 또는 표현, 출신 국가, 군대 신분, 장애, 임신 관련 상태, 가정 폭력 피해자 상태, 가족 상태 또는 기타

보호 계층에 근거하여 주택, 고용, 교육, 신용 및 공공 숙박 시설 등 기타 관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합니다.

뉴욕주는 모든 시민에게 충만하고 생산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인권법을 제정한 미국 최초의 주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인권부는 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차별을 경험한 뉴욕 시민은 **DHR**에 온라인,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권법과 인권국의 활동에 관한 내용은 인권부 웹사이트 www.dhr.ny.gov를 방문하거나 [1-888-392-3644](tel:1-888-392-3644)번으로 전화하십시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